

1. 개정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급된 기술수준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설치 변경허가 신청 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또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조문 중에서 모법 조항 인용 시에 단순 오기된 사항을 정정하여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의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마련 절차 정비

(안 제2조제2항 신설)

-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술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활용하는 내용 신설

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설치 변경허가 신청 시의 첨부 서류 간소화(안 제8조 [별지1], 제9조 [별지3])

다. 사업장 설치신고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인용 모법 조항 오기 정정(안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35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4. 00.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심사 진행 예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마련을 위한 현행 기술조사 등을 할 때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각각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호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1호서식 및 별지 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생략)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마련을 위한 현행 기술조사 등을 할 때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① 법 제15조제6항 ----- -----.
②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6항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③ 법 제15조제6항 ----- ----- ----- ----- -----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3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략) 4. <u>법 제15조제4항</u> 후단에 따른 신고: 5만원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수료)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15조제6항</u> ----- -----
--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업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에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명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설비용량	수량	방지시설명	설비용량	수량
	일일조업 시간(연간 가동일)	대기오염물질 종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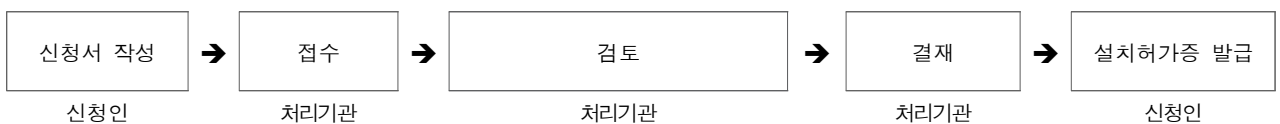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과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1부) 2.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1부)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4.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1부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전부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수수료 100,000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1. 대표자란은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설치예정일란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예정일을 적습니다.
3. 가동개시예정일란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후 가동개시예정일을 적습니다.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생산공정란은 생산공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으로 표시합니다.
6. 일일조업시간은 시간 단위로 적고, 연간가동일은 일 단위로 적습니다.
7. 대기오염물질 종류란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8. 연료사용량란 및 원료 사용량란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 및 원료의 사용량을 각각 적습니다.
9. 배출계수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를 적습니다.
10.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란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오염물질의 양을 적습니다.
1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란은 방지시설을 통과한 후 배출구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처리기관: 환경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8. 16.>

[]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 설치 변경신고서
[]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변경신고	20일 7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에정일					
변경 내용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기존 사항				변경 사항				
		배출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설비용량	수량	배출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설비용량	수량	
	방지시설	방지시설명		설비용량	수량	방지시설명		설비용량	수량	
	대기 오염물질	대기오염 물질 종류	배출계수	발생량	배출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배출계수	발생량	배출량	
	그 밖의 변경사항									
	변경신고 사항									
	추가 할당 신청 내용	연도별 배출허용총량(kg/년)								
대기오염물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추가 할당 신청량(kg/년)										
대기오염물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변경 허가	1. 다음 각 목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과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나.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다.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라.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마.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바.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사.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 라 목부터 제 카 목까지의 서류 전부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로 갈음할 수 있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변경허가: 100,000원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추가되거나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추가 할당 신청: 수수료 없음
	변경 신고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려는 서류 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추가 할당 신청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로 갈음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측정한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년) 명세서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환경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